

2009두23631

판 결 서

대법원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2010. 3. 25. 원본영수	인
2010. . . 판결송달	

사 건 2009두23631 보험료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전건설

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-1 한성빌딩 502호

대표이사 김정환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

담당변호사 김성근, 최승호, 박정대, 이필관, 김용

피고,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

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-9

대표자 이사장 정형근

소송수행자 장순현, 정규순, 오경일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

담당변호사 김동건, 정인진, 김상훈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25. 선고 2009누13223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「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

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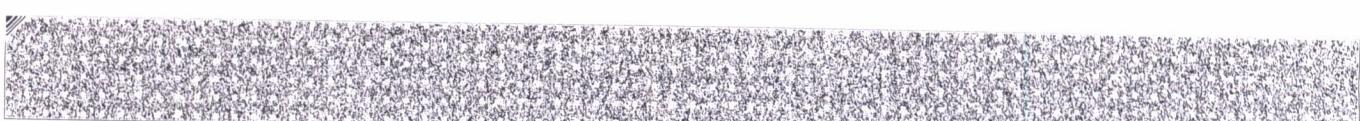
2010. 3. 25.

재판장 대법관 양창수

대법관 양승태 _____

주 심 대법관 김지형

대법관 전수안 _____





온라인 이용바코드

정본입니다.

2010. 3. 26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류 시 청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